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안내

- ① 지역특화형 비자 (F-2-R / F-4-R)
- ② 숙련기능인력 (E-7-4 / E-7-4R)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지역특화형 비자

(F-2-R / F-4-R)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 요건



- [학 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 [소 득]**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전북 생활임금 이상(26년 31,124,280원)
*학력/소득 중 하나 충족시 가능
- [거 주 지]**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예외 기준 허용)
- [취 업]** 인구감소지역 *취업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
- [기본소양]** 4단계 이상(Topik 4급, Kiip 4단계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
- [국적제한]** 기초지자체별 단일 국적 30% 미만 모집
- [인력제한]**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3개월이상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 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추진흐름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F-4-R) 신청 요건




기존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국내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해외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필요서류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유형

구 분	제출서류	서류내용	비고
외국인 (동포)	① 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필수)	
	② 거주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③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 (E-7-4 / E-7-4R)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등까지 고려하여 시행하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의 일환입니다.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E-7-4/E-7-4R) 신청 요건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3년(E-7-4)/2년(E-7-4R)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E-7-4 해당, E-7-4R 가점사항)
 - ④ 기본항목의 ㉠ 평균소득 및 ㉡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 특례 :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 (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26. 12. 31.)
- ⑤ 기업별 사업장 고용인원의 30% 이내 허용(E-7-4), 내국인고용인원에 따라 50명까지 허용(E-7-4R)



• E-7-4 : 도내 전지역(14개시군)

• E-7-4R : 도내 인구감소지역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익산)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 점수표(E-7-4 / E-7-4R)

☑ 기본항목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분	2,500~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점	50	65	80	95	11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점	50	80	120

Ⓒ 나이 : 최대 60점

구분	19~26세	27~33세	34~40세	41세~
배점	40	60	30	10

⊕ 가 점

추천		② 고용 기업체	③ 현금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 면허증
① 중앙 부처	① 광역 지자체* (E74R 50점)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 점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E-7-4 / E-7-4R)

제출서류	서류내용	비고
신청 관련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E-7-4/E-7-4R 발급신청서 - 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통합 신청서 - 신상 기술서	
본인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소득확인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
경력증명서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eps.go.kr
구직등록필증(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work.go.kr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계약서(E-7-4R)	
고용기업 관련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E-7-4 필수, E-7-4R 가점사항) - 신원보증서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외국인 근로자별 체류비자 별도표기)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업종입증서류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사업자 등록증*>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뿌리산업 <사업자 등록증> 추가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 농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조선업 <사업자 등록증> 추가 <원청확인서/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 ▪ 어업/ 내항상선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건설업 <건설업등록증>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서(업종 구분 없이 필수로 제출)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topik.go.kr 사회통합정보망
가점관련서류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 기능사 이상 자격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 - 국내 운전면허증(면허증) ※ 가점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문의처 Contact us

전북특별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 (063-280-2082)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063-280-1011~1013, 5)



접수처 Reception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시군 담당부서
***시군별 담당부서(아래 참고)**

연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1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063-280-1011~1013, 5
2	전주시 인구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281-8607
3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군산시 시청로 17	063-454-2634
4	익산시 기획예산과	익산시 인북로32길 1	063-859-5288
5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5605
6	남원시 기획예산과	남원시 시청로 60	063-620-6820
7	김제시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앙로 40	063-540-3980
8	완주군 인구정책과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063-290-2612
9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063-430-8058
10	무주군 인구활력과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063-320-2061
11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63-350-2191
12	임실군 여성가족과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063-640-4653
13	순창군 경제교통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063-650-1324
14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063-560-2361
15	부안군 지역경제과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351